

2023년 A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2023. 6.



감 사 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1. 감사배경 및 목적2. 감사대상 및 범위3. 감사 중점4. 감사기간 및 인원	1 2 2 3
II. 감사대상 업무 주요 현황 1. ④국 조직 및 인원 2. 팀별 주요 업무현황	4
III. 감사결과 1. 총평 2. 지적사항 총괄 3. 분야별 지적사행요약 4. 모범사례	7 8 9 12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16 16
V. 기타사항1. 감사교육 및 감사마감회의 실시2.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3. 기타 조치사항	18 18 18
Ⅵ. 이의신청(재심의) 1. 이의신청 접수 2. 이의신청 심의 결과	19 19
[별첨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첨2]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서	20 38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2022년 말 실시한 kobaco 미래위험 선정 결과 "기금 사업 관리 위험(기금사업 부적정 관리 등)"이 2순위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이후로 최근 4년간 국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는 등 감사 순기가 도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A)국 종합감사를 반영하게 되었다.

④국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 지원, 광고통계 및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을 총괄 수행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2020년 이후 연 평균 자체사업예산 587백만 원, 기금사업예산 4,894백만 원을 관리 및 집행하고 있다. 특히 ④국이 관리하는 기금 예산은 공사 전체 기금예산의 약 44.5%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표 1] \iint 자체예산 및 기금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자체예산		426	502	698	721	587
기금 예산	공사전체 기금예산	12,244	9,712	10,702	11,289	10,987
	④국 기금예산	5,418	4,295	4,637	5,224	4,894
	비중	44.3%	44.2%	43.3%	46.3%	44.5%

또한 2020년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신규 시행되고, 정부 반부패 총괄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신규 출범하여 공공재정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강화 의지를 표명하는 등 기금사업 업무에 대한 고도의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진흥사업 및 기금예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적정성 및 효율성, 관련 법령과 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패유발 및 방만경영 요인을 진단함과 동시에, 업무프로세스 및 관련 지침의 개선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A)국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 대상 및 범위

감사대상 업무기간은 2019. 9. 1.부터 2023. 2. 28.까지로 설정하였으며, ④국의 업무수행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에 앞서 제·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상위부처 지침, 방만경영 위험요소, 조사 및 용역업무 추진의 불공정관행 및 규제 요소 등을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감사 중점사항을 결정,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2] 🗚국 종합감사 중점 점검사항

구분	중점 점검 사항
기금사업의 수행 적정성	 보조금 사업 용역계약 체결 적정성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기금예산 회계처리 등 업무 과정 적정성 점검
ⓒ소 운영의 적정성	 연구주제 중복 선정 여부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연구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 회계처리의 적정성

구분	중점 점검 사항
세미나·단체 등 지원사업 추진 적정성	■ 지원 기준 수립의 공정성 ■ 과거 지원 내역의 적정성 ■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행정추진의 공정성 훼손 행위 및 사회적책무 위반행위 점검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적정성 업무담당자 사익추구로 인한 공정성 훼손 여부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방만경영 요인 및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점검	 내부연구 예산의 과다 집행 여부 보조금 예산의 부정청구 여부
임직원행동강령 및 복무기준 준수 점검	■ 겸직신고, 외부강의, 출장 등 복무행태 점검
모범사례 발굴	■ 진흥사업 신규추진 및 업무개선 등 모범사례 발굴

4 감사기간 및 인원

이번 감사는 2023년 3월 27일부터 2023년 4월 14일까지 총 15일간 실시하였으며, 내부감사인은 총 5명이 참여하여 실지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내부전문가 2명, 청렴옴부즈만 1명 등 총 3명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감사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표 3] 🔘국 종합감사 감사인 내역

구분	성명·직급	비고
	☎☎ 감사실장	
	☆☆☆ 차장	감사반장
내부감사인	★★★ 차장	
	○○○ 과장	
	●●● 대리	감사주무
IUHHOJ	□□□ 과장	광고진흥업무 근무경력 3년
내부전문가	◇◇◇ 과장	변호사 자격
청렴옴부즈만	◈◈ ◈ 위원	공인회계사 자격
		1

^{* ◎◎◎} 감사팀장 감사반 제척

Ⅱ 감사대상 업무 주요 현황

1 | 죄국 조직 및 인원

④국은 아래 [표 4]와 같이 ⑧팀(Ē소 포함), ⓒ팀, ⑩팀 등 총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정원 25명, 현원 26명이며, 이 중 일반행정직은 18명으로 현원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은 7명으로 26.9%이며, 나머지 1명은 [P본부장 비서직으로 3.8%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정원 및 직급별 현원 현황(명)

		현원(직급별)									
구분	정원	2급	3갑	3을	4급	5급	전문직	업무 지원직	계	정원 대비	
・・・・・・・・・・・・・・・・・・・・・・・・・・・・・・・・・・	10	1	1	2	2	1	6	1	14	4	
© E	10	-	2	1	1	1	1	_	6	∆4	
①팀	5	1	1	1	2	2	-	_	9	1	
합계	25	1	4	4	5	4	7	1	26	1	

※ B팀 인원에는 A국 국장을 포함함

2 팀별 주요 업무현황

④국은 다음 장 [표 5]와 같이 기금사업관리, 광고통계데이터관리, 광고표준화, 연구사업관리, 시청점유율 조사와 관련 총 73개의 단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 🖎국 업무 개괄

구 분	직 무	단위업무
	미디어· 광고 진흥사업	1. 미디어·광고진흥사업 기획, 개발, 조정, 관리 및 유관부서 정책협력 2. 미디어데이터 안검증 관련 기획 및 설계 3. 미디어데이터 안검증 관련 협의체 운영 등 대외 협력 4. 광고거래플랫폼 ISP 수립 등 기획 및 설계 5. 국내OT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기획 및 설계 6. 국제OTT포럼 개최 관련 업무 7. 해외OTT시장조사 관련 업무 8. 해외OTT이용자반응분석 관련 업무 9. 미디어·광고 관련 포럼(디지털미디어콘텐츠 진흥 포럼 포함), 심포지움, 세미나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 10. 미디어·광고 관련 단체 지원 및 협력업무 11. Big TV 프로젝트 사무국 업무
®팀	연구사업관리	12. 기타 미디어·광고산업 진흥 관련 업무 1. 정책연구 기획, 수주, 관리 2. 내부연구 및 연구용역 추진 관리 3. ⑥소 행정지원 4. 공사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연구 5. 방송통신광고 산업진흥 관련 연구 6. 정부 정책연구 수행 7. 기금사업 개발 및 전략수립 지원 8. 정부 및 학계 등 대외협력 9. 미디어 및 광고시장 동향 조사 10. 기타 공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과제 연구
	기금사업관리	1. 소관 기금사업 관련 대외정책협력 및 위탁업무 수행 2.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예산 신청, 지출, 수행보고서 작성 4. 사업 지출 결의서, 정산 보고서 및 효과분석 보고서 작성
ⓒ팀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시청점유율조사)	1. N스크린시청기록산출조사 설계 및 기획 2. N스크린시청기록산출조사 조사업체 선정 및 실사 관리 3. N스크린시청기록산출조사 결과 활용 및 통합시청점유율 산출 4. N스크린 시청기록산출조사 전문가 연구반 및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통합시청점유율 관련 세미나 기획 및 개최 6. 시청점유율조사 검증 기획 7. 시청점유율조사 검증 연구 업체 선정 및 연구 관리 8. 시청점유율조사 검증 연구반 운영 9. 검증연구 보고서 발간 및 개선권고안 발송 10. 방송사업자별 현황 조사(지분, 소유구조 변동내역 등) 및 매체교환율 등 자료수집

구 분	직 무	단 위 업 무
©Ħ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시청점유율조사)	11. 시청점유율 분석 시스템용 DB구축 12. 통합기초조사 조사 설계 및 기획 13. 조사업체 선정 및 실사 관리 14. 기초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15. 조사 결과 본조사 적용 및 대내외 활용 16. 시청점유율 조사 설계 및 기획 17. 시청점유율 조사 업체 선정 및 실사 진행 18. 시청점유율 일일주간월간연간 보고서 산출 19. TV신문 이용행태조사 설계 및 기획 20. TV신문 이용행태조사 업체 선정 및 실사 관리 21. TV신문 이용행태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 22. 미디어, 통계전문가 자문단 운영
	기금사업관리	1. 소관 기금사업 관련 기재부 국회 등 대외 협력 및 위탁업무 수행 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사업예산 신청, 지출, 수행보고서 작성 4. 사업지출 결의서, 정산보고서 및 분석 보고서 작성 5.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운영 지원 및 미디어 다양성 증진 관련 정책 자료 생산·제공 등
① □	광고통계 데이터 관리	1. 방송통신광고비조사 기본계획 수립 2.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사업 기본계획 수립 3. 광고경기전망지수(KAI) 기본계획 수립 4. 조사 설계·기획 및 업체선정, 결과분석 및 보고 5. 지표 산출 설계·시스템(RACOI) 관리 및 업체선정, 결과분석 및 보고 6.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RACOI)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7. 방송통신광고통계시스템(ADSTAT) 운영 업무 8. 공공데이터 제공 기본계획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총괄 9.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고객자문단 대응 및 협력 등
	광고표준화	1. 방송광고 코드표준화 기획 2. 신규 방송 프로그램 유형 및 광고소재 업종별 코드분류 협의·조정 업무
	기금사업관리	1. 소관 기금사업 관련 대외정책협력 및 위탁업무 수행 2.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예산 신청, 지출, 수행보고서 작성 4. 사업 지출 결의서, 정산 보고서 및 효과분석 보고서 작성

Ⅲ 감사결과

1 총 평

감사대상 기간 동안 ④국을 대상으로 ▷기금사업 수행의 적정성 ▷ⓒ소 운영의 적정성 ▷행정추진의 공정성 훼손 행위 및 사회적책무 위반행위 ▷방만경영 요인, 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관리법 준수 및 ▷세미나 및 학회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방만경영 요인 및 공공재정환수법·보조금관리법 준수 여부는 적절히 지켜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기금사업 수행의 적정성 분야에서 ▶연간사업 추진 문서의 일상감사 누락 ▶주요 연간사업의 추진 결과보고 누락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지침 미준수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행정추진의 공정성 훼손 행위 및 사회적책무 위반행위 점검 분야에서 ▶용역계약의 정산증빙 미흡에 관한 사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관련 지침 미준수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 운영의 적정성 분야에서 내부연구비 활용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연구목적의 도서구입비 사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세미나 및 학회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학회활동비 지원금 사용 부적정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광고산업 진흥분야 신규사업의 도전적인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점에서 ▶OTT 산업 지원을 통한 공사의 사업영역 확장 사례 ▶스마트폰/PC OTT 방송프로그램 조사 강화 사례 ▶광고산업실태조사 성과 도출 및 사업 확장 기반 구축 사례를 감사모범사례로 선정하였다.

향후 감사실은 감사 지적사항 후속 조치 점검을 통해 ▷기금 사업 수행의 적정성 ▷ⓒ소 운영의 적정성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 준수 및 방만경영 유발 요인 여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천원)

합계						정(금액)									
총 건수	신분 조치 인원	재정 조치 금액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소계	추징	감액	기타	경고 (인원)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현지 조치	모범 사례
10	32	391	-	-	2 (391)	2 (391)	-	-	-	5 (32)	-	-	-	-	3

※ 시정요구와 주의요구가 병과된 지적사항은 시정 1건으로 산정

3 분야별 지적사항[요약]

① 연간 사업 추진문서의 일상감사 누락에 관한 사항

- ▷ (내용) 「일상감사 업무지침」에 따르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를 일상감사 대상 범위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⑧팀・ⓒ 팀・⑪팀에서는 주요 연간 사업 추진 품의서에 대해 일상감사를 필하지 아니한 점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A)국장 ◆◆◆ 등 관련자 9명 주의 조치

② 주요 연간사업의 결과보고 누락에 관한 사항

- ▷ (내용) 「예산운용지침」에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계기별 업무회의비 등을 집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보고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보 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진흥사업 개발 상설 협의체 운영 및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그 연간 사업 결과를 전 결권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⑧팀과 ⓒ팀은 해당 사 업의 결과보고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A국장 ◆◆◆ 등 관련자 7명 주의 조치

③ 개인정보보호 지침 미준수에 관한 사항

- ▷ (내용)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하면 공사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허용된 권한 이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행위를 막기 위해 문서에 보호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⑧팀은 세미나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수령, 전자문서 등록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개인파일을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A국장 ◆◆◆ 등 관련자 6명 주의 조치

④ 용역계약의 정산업무 미흡에 관한 사항

- (내용) ⓒ팀에서 용역계약 상대방인 ⑥ ⑥ ⑥ ⑥ ◎ ⑥ 와 작성한 「용역표준계약서」에 따르면,계약이행 완료 후계약상대자는 4주 이내에 증병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하며,발주처인 공사는 해당 내용을 검토 후 정산을 완료한 경우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지급하여야함. 또한 「회계규정」에 따르면,용역계약대금 지출에 있어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거래자가발행하는 영수증의 영수금액 등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팀은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았음에도 별도의 보완조치를실시하지 않고 용역대금 잔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④국장 ◆◆◆ 등 관련자 3명 주의 조치

⑤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미준수에 관한 사항

- ▷ (내용) 2022년 1월 시행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팀은 "2022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용역"등 2개 용역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내・외부 위원을 동수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A)국장 ◆◆◆ 등 관련자 5명 주의 조치

⑥ 내부 연구 자료구입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

- ▷ (내용) 「예산규정」 및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 내부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에 따르면 내부연구비를 활용한 도서 및 자료구입은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에서 연구목적과 관련성이 희박한 도서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관련자 ®팀 연구위원 ▽▽▽ 시정·주의요구

⑦ 연구위원 학회활동 지원 내역 부적정에 관한 사항

- ▷ (내용) B팀은 「방송・광고・언론 관련 학회활동 지원계획」에 따라 임원 및 전문직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최대 3개 학회 범위 내에서 가입비・연 회비・세미나 참가비용에 한정하여 학회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②소에서 1년 단위 연회비가 아닌 평생회원 가입비를 지원 신 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 (처분요구) 관련자 (B)팀 연구위원 ▼▼▼ 시정·주의요구

4 모범사례

(BEI) OTT산업 지원을 통한 공사의 사업영역 확장

가. 추진배경

- ICT 기술 발전 및 시청행태 변화에 따른 시청각 미디어로서의 OTT 급부상
-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잠식에 따른 국내 OTT 산업 지원 필요성 대두
 - OT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해외진출 필요
- ○OTT 관련 전담기관의 부재에 따른 효과적 정책 추진 및 지원의 어려움
 - → 공사의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다각적 OTT산업 지원사업 추진

나. 세부추진내용

- (추진전략) OTT산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해외교류 추진
- (조사연구) 해외 국가별 조사보고서 발간 및 해외진출 전략 연구 시행
 - 기금을 통한 국가별 조사보고서 발간
 - ▶ 해외 OTT 시장조사(2022년~) : 국가별 산업환경 분석을 위한 정성조사
 - ▶ 해외 OTT 이용행태조사(2022년~) : 국가별 소비자 반응 분석을 위한 정량조사

구분	시장조사	이용행태 조사					
조사국가	- '22년: 3개국(중국, 멕시코, 브라질) - '23년: 4개국(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UAE)	- '22년: 3개국(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 '23년 : 4개국(멕시코, 브라질, 영국, 일본)					
조사대상	전문가, 일반인(SVOD 이용자)	SVOD 이용자					
샘플수	전문가 : 국가별 4명 이상 일반인 : 국가별 4명 이상	정량조사: 국가별 1,000~2,000명 심층인터뷰 : 국가별 4명 이상					
조사방법	심층인터뷰, 문헌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문헌조사					
조사목적	국내 OTT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자체 예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수행
- ▶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현황 및 규제정책 연구(2020년)
- ▶ K-OTT 플랫폼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연구(2022년)
- (기술개발) ITP 과제 선정을 통한 OTT모니터링 측정기술 개발
 - 공기업 최초 미디어 관련 기술개발 수행(민간, 대학과의 컨소시엄 구성)
 - 4년간(2022~2025) 컨소시엄 사업비 : 총 50억 원(공사 11억 원)
- (해외교류) 기금을 통한 국내 최초 국제 OTT 포럼 개최(2022년~)
 - OTT 관련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시장 분석 및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다. 추진성과

- OTT 전담 공공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OTT플랫폼 지원사업 선점
 - 미디어 거버넌스 변경 국면에서 공사 역할 확대 기대
- OTT 해외진출 지원사업(기금) 활용 및 증액을 통한 공사 예산 절감 실시
 - 2022년 350백만 원(인건비 40백만 원) → 2023년 600백만 원(인건비 65백만 원)

(ⓒ팀) 스마트폰/PC OTT 방송프로그램 조사 강화

가. 추진배경

- OTT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매년 미디어다양성증진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2023년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 예산 5억 증액 요청
 - 조사 패널 확대로 조사 결과 타당성/신뢰성 제고 및 국내외 OTT 시청기록 객관적 조사 분석

나. 세부추진내용

- 2023년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 OTT 조사범위 확대방안 등 5억 중액 예산 방통위 제출
 - 'OTT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기록 조사 가능성 탐색 및 사업 필요성 설득
- 스마트폰/PC 시청기록조사 패널 및 조사범위 확대
 - **(조사패널 확대)** 3,600명(스마트폰 2,600명, PC 1,000명) → 5,000명(스마트폰 3,500명, PC 1,500명)으로 확대
- OTT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기록 시범조사 예정(23년 中)
 - OTT 오리지널 콘텐츠의 위상 강화[예, 오징어게임(넷플릭스), PACHINKO(애플 TV), 술꾼도시여자들(티빙) 등]에 따라,
 -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기록을 시범적으로 조사(조사 목표 : 8개 시리즈)

다. 추진성과

- '23년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사업 기금예산 5억원 증액
 - N스크린(스마트폰·PC) OTT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자료를 생산 중이며, '24년에는 조사대상 OTT 확대 예정
 - 예산 증액을 통해 OTT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국내 최초로 수행, 미디어·광고산업 R&D 기초자료 제공 예정
- 스마트폰・PC를 통한 OTT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에 대한 객관적 조사 결과 공개로 OTT를 통한 K-콘텐츠 이용 가치 정보 제공 예정
 - 조사 패널 확대로 조사 결과 타당성/신뢰성 제고 및 국내외 OTT 시청기록 객관적 조사 분석 가능 기대

(DE) 광고산업실태조사 성과도출 및 사업 확장 기반 구축

가. 추진배경

○ 광고제작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문화부에 지속 제기, 2022년 신규로 보조금 3억 지원받아 사업 수행

나. 세부 추진내용

- 회사간(광고대행사-광고제작사)간 광고물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실 태와 광고제작 인력의 노동환경 실태에 관한 심층 조사 실시
 - 산업 기본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8,573개, 산업 종사자 1,916명) 리스트 확보, 최종적으로 약 2천개 유효표본 획득
 - 광고제작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행사, 제작사, 프리랜서 등 자문 다수 실시, 조사 신뢰성 제고 및 업계 공갂대 확보
 - 조사 결과를 학회 세미나(한국광고홍보학회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발표, 공론 화 및 해결책 모색을 위한 이슈 제기
-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차년도 사업내용 발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반영
 - 2022년과 동일한 예산(3억)이 주어진 상황에서 경비성 예산(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대폭 절감, 연구개발비 28백만 원 증액 반영(2022년 205백만 원 ⇒ 2023년 233백만 원)
 - 총예산 증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용역 내에 2024년도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 연구(광고제작 산업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포함

다. 추진성과

- 기존의 공사 진흥사업 영역에서 광고제작 분야로 공익적 역할 확대계기 마련
 - 광고 분야에서 주로 교육, 학술, 공익광고, 매체비용 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사의 공익적 역할 기반을 광고제작산업 환경 개선까지 확대 기반 마련
 - 차년도(2024년도) 사업 확장(광고제작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1 처분요구 일람표

				처분요구	1	조치	
번호	부서	건명	종류	재정상 (천원)	신분상 (명)	기한	감사자
1	BEI CEI DEI	연간사업 추진 문서의 일상감사 누락	주의	-	9	60일	☆☆☆
2	®EI ©EI	주요 연간사업의 결과보고 누락		-	7	60일	☆☆☆
3	® E I	개인정보보호 관리 미흡		-	6	60일	●●●
4	© E I	용역계약 정산업무 미흡		-	3	60일	000 ���
5	DE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미 준수	주의	-	5	60일	000
6	B目 (E公)	내부연구 자료구입비 사용 부적정	시정 주의	141	1	60일	***
7	B目 E公	학회활동비 지원금 사용 부적정	시정 주의	250	1	60일	***
		총 계		391	32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처분 내역								
제 목	처분 요구	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주의	®팀	차장	444					
	주의	®팀	팀장	DDD					
	주의	④국	국장	***					
© -1-1-1-1 1 1-1-1-1-1-1	주의	©팀	과장	444					
① 연간사업 추진 문서의 일상감사 누락	주의	©팀	팀장	>>>					
٦	주의	ⓒ국	국장	***	前 A子				
	주의	۵EI	대리	දාදාදා					
	주의	Ĥ팀	차장	444	前 Del				
	주의	ΦĦ	팀장	***					

			처분 내역		
제 목	처분 요구	현 소속	직책	성명	비고
	주의	④국	국장	***	
	주의	©국	국장	***	前 A子
	주의	① 팀	국장		前 A子
② 주요 연간사업의 결과보고 누락	주의	® E I	팀장	\triangleright \triangleright \triangleright	
	주의	©팀	팀장	>>>	
	주의	⑪팀	팀장	***	前 ©目
	주의	® E I	차장	444	
	주의	④국	국장	***	
	주의	① 국	국장		前 A子
② 게이저나나는 게기 미층	주의	①팀	국장		前 A子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 미흡	주의	®팀	팀장	\triangleright \triangleright \triangleright	
	주의	®팀	차장	444	
	주의	ⓒ팀	차장		前 Bel
	주의	④국	국장	***	
④ 용역계약의 정산업무 미흡	주의	©팀	팀장	>>>	
	주의	©팀	부장	000	
	주의	④국	국장	***	
	주의	ⓒ국	국장	^	前 A子
⑤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 처리 기준 미 준수	주의	DΕ	팀장	***	
서디 기준 미군구	주의	(HE	차장	444	前 D目
	주의	D目	대리	දාදාදා	
⑥ 내부연구 지료구입비 사용 부적정	시정 주의	B팀 (Ē소)	전문직위원	$\nabla\nabla\nabla$	
⑦ 학회활동비 지원금 사용 부적정	시정 주의	B팀 (E소)	전문직위원	***	

V 기타사항

1 감사교육 및 감사마감회의 실시

- □ 감사교육 실시
 - 교육일자 : 2023. 3. 24.(금)
 - 교육대상 : 감사실장 ☎☎☎ 등 8명(내·외부전문가 포함)
 - ① 교육사항 : (A)국 업무개요 및 예상 문제점에 관한 사항
- □ 감사마감회의 실시
 - 일자 : 2023. 4. 19.(수)
 - 참석자 : 3명(A)국장, 감사실 ☆☆☆ 차장, ●●● 대리)
 - 내용 : 감사사항 강평 및 의견 교환, 실지감사 관련 건의사항 청취 등

2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

- □ 현업부서에 감사결과 통보 : 2023. 5. 22.
-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2023. 5. 31.
- □ 감사지적 · 처분 및 조치이행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 : ~ 2023. 6. 23.
- □ 감사 처분요구 이의신청(재심의 요청) 기한 : ~ 2023. 6. 21.

3 기타 조치사항

- □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감사결과 보고서 게시 및 내용 공유
- □ 모범사례 전파 및 2023년 감사 모범사례 심사 후보로 확정
- □ 이의신청(재심의) 기한 종료 또는 이의신청 심의 종료 후 알리오 공시 등록

Ⅵ 이의신청(재심의)

1 이의신청 접수

- □ 이의신청 접수 개요
 - 접수일자 : 2023. 6. 21.(수)
 - 이의신청 대상 처분요구(1건)
 - 「연구목적 도서구입비 사용 부적정」(시정·주의요구)

2 이의신청 심의 결과

- □ 이의신청 감사심의위원회 개최 : 2023. 6. 30.(금)
- 심의 내부위원 : ☎☎ 실장, ☆☆☆ 차장, ○○○ 과장
- \bigcirc 심의 외부위원 : €€€ 팀장, $\Sigma\Sigma\Sigma$ 차장, §§§ 과장
- □ 이의신청 감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기각
- □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서 통지 : 2023. 6. 30.(금)
- □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조치기한 : 2023. 7. 14.(금) 이내

※ 별첨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서. 끝.

[별첨1] 감시결과 처분요구서

주 의 요 구

제 목 연간사업 추진 문서의 일상감사 누락

관계부서 요국 용팀, 오팀, 오팀

내 용

1. 업무개요

®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미디어·광고 진흥사업 및 연구사업 관리,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광고통계 데이터 작성 및 관리업무, 광고표준화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팀은 「업무분장지침」 제3조 별표에 따라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청점유율 조사사업과 부대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일상감사란 공사 「감사규정」제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체감사의 한 종류로써, 주요 업무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감사이며, 일상감사 대상 범위 등 세부사항은 공사 규정 「일상감사 업무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상감사 업무지침」 (별표 1)에 따르면,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사항을 일상감사 대상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 단위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과 그 결과보고 문서는 일상감사를 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지침 (별표 1)에 따르면, "매 건당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원인과 그 변경사항(VAT 별도)"을 일상감사 대상 범위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요 예산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 실시 계획 또한 일상감사를 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 대상기간 중에 (A)국에서 작성된 주요 연간 사업의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연구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B)대 해당하는 문서들을 일상감사 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A국 일상감사 미필 문서 내역

부서	문서명	기안자	최종 결재자	소요예산
B目	OTT가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계획 (전자 ④국-1320, 2022.12.8.)	444	***	40백만원
©팀	2021년도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결과 보고 (전자 ④국-419, 2022.3.23.)	444	***	3,807백만원
©FI.	2021년도 광고경기전망지수(KAI) 조사사업 결과보고 (전자 ④국-97, 2022.1.21.)	\$ \$ \$	***	101백만원
①팀	2022년도 광고경기전망지수(KAI) 조사사업 결과보고 (전자 ④국-120, 2023.1.31.)	ኇኇኇ	***	103백만원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의 사실과 관련하여 각 관계부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일상감사 업무지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의] B팀, ⓒ팀, Ď팀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일상감사 업무지침」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일상감사 대상 범위 문서에 일상감사를 필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A) 7		국장	***	
(前)	④국		국장	^ ^ ^	(現 ⓒ국장)
	④국	B目	팀장	\triangleright \triangleright \triangleright	
(前)	④국	©팀	팀장	***	(現 D팀장)
	④국	©팀	팀장	>>>	
(前)	④국	①팀	차장	$\Diamond \Diamond \Diamond$	(現 田目)
	④국	B目	차장	$\triangleleft \triangleleft \triangleleft$	
	④국	©팀	과장	444	
	A子	①팀	대리	රුරුරු	

주 의 요 구

제 목 주요 연간사업의 결과보고 누락

관계부서 A국 B팀, C팀

내 용

1. 업무개요

®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미디어·광고 진흥사업 및 연구사업 관리,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팀은 「업무분장지침」 제3조 별표에 따라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청점유율 조사사업과 부대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진흥사업 개발 및 유치를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사업과 법률로써 정해진 공사의 주요 목적사업 중 하나인 미디어다양성 증진 사업 관련하여 업무계획을 예산안과함께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실시하게 될 경우, 사업 추진 종료 이후계획에 따른 업무 추진 내역과 함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결과를 전결권자에게 결과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공사 「예산집행지침」에서는 특정목적을 위한 계기별 업무회의비 등을 집행한 경우 결과보고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 대상 기간 중에 ④국에서 작성된 주요 연간 사업의 계획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결과보고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A국 결과보고 미작성 사업 내역

부서	사업명	기안자	전결자	소요예산
ΩFI.	2021년 진흥사업개발전략협의체 운영 및 업무계획 (전자 ④국-58, 2021.1.15.)	===		6,400 천원
B팀	2022년 진흥사업개발전략협의체 운영 및 업무계획 (전자 ④국-12, 2022.1.4.)	444	***	11,720 천원
©팀	2020년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 기본계획 (전자 ④국-40, 2020.1.16.)	10° 10° 10°	사 장	4,916 백만원

图目의 경우, 진흥사업개발 전략협의체를 운영하면서 2021년 6,400천원 및 2022년 11,72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해당 사업의 연간 결과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팀의 경우, 2020년 미디어다양성 증진사업의 기본계획을 사장 결재를 득하여 4,91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 사업을 추진한 뒤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의 사실과 관련하여 각 관계부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각 연도별 연말 정기인사로 인하여 담당자가 전보, 교체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아 결과보고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의] B팀, C팀은 향후 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연간 사업 추진 후 그 결과를 적정한 전결권자에게 작성·보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A 子		국장	***	
(前)	④ 국		국장	^ ^ ^	(現 ⓒ국장)
(前)	④ 국		국장		(現 ①目)
	④ 국	B팀	팀장	\triangleright \triangleright	
	④ 국	C팀	팀장	>>>	
(前)	④ 국	C팀	팀장	***	(現 D팀장)
	<u>A</u>	B팀	차장	$\triangleleft \triangleleft \triangleleft$	

주 의 요 구

제 목 개인정보보호 관리 미흡

관계부서 A국 B팀

내 용

1. 업무개요

®팀은「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미디어·광고 진흥사업 및 연구사업 관리, 기금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디어·광고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⑧팀은 대외교류 활성화 및 학계, 단체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하여 세미나 및 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세미나(행사) 지원기준 및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단체의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 및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세미나(행사) 개최 이후 해당 단체로부터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정보보호지침」제4조에 의하면 공사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허용된 권한 이외의 복제, 출력 등의 이용 행위를 막기 위해 문서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지침 제3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업무용 PC에 저장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감사 대상기간 세미나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표]에 해당하는 개별 세미나 지원사업 결과보고 문서의 첨부파일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지만 보안 처리되지 않은 문서 내역

부서	문서명	개인정보 내용
	「2022년 부산국제광고제 지원 결과보고」 (전자 ④국-1031, 2022.9.13.)	섭외 연사의 사진, 성명, 여권번호 및 생년월일(여권사본)
®팀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지원 결과보고」 (전자 ④국-636, 2020.11.5.)	섭외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원천징수영수증)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지원 결과보고」 (전자 ④국-669, 2020.11.19.)	섭외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인건비영수증)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의 사실과 관련하여 관계부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한글문서 또는 엑셀파일의 경우 기안문 파일 첨부시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여 개인정보 자체검출이 가능하나, 이미지 파일 형식의 첨부문서는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향후 첨부자료의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의] ⑧팀은 향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업무 문서작성시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필요시 첨부문서를 암호화 및 마스킹처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A子		국장	***	
(前)	And The And T		국장		(現 ①目)
(前)	④ 寸		국장		(現 ①국장)
	<u> </u>	B目	팀장	\triangleright \triangleright \triangleright	
(前)	<u> </u>	B目	차장		(現 (K)팀)
	(A) 7	B팀	차장	$\triangleleft \triangleleft \triangleleft$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계약 정산업무 미흡

관계부서 A국 C팀

내 용

1. 업무개요

④국 ⓒ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시청점유율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TV와 신문간 매체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TV・신문이용행태 조사 업무를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22년 TV·신문이용행태 조사의 계약상대자인 ⑥⑥⑥⑥ 유한회사(이하 ⑥⑥⑥⑥⑥)와 공사가 체결한 「용역표준계약서」의 4.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4주 이내에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내용을 검토 후 용역비 비목별로 증감, 정산하여야 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규정」제55조(지출증빙서)에 따르면 용역계약대금의 지출에 있어 지출결의서, 검수보고서 또는 이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9조(영수증)에 따르면, 거래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의 영수금액 등에 있어 특히 유의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팀은 계약상대방이 대가 수령을 위해 정산내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첨부 증빙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3년 1월 12일, ●●●●●● "2022년 TV·신문 이용행태조사"용역에 대한 잔금(55백만원, 부가세포함)을 공사에 청구하였는데, [표]와 같이 정산내역서와 다른 금액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본 용역 이외에 타용역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표기하였다.

[표] 2022년 TV신문 이용행태조사용역 정산내역서과 증빙서류의 불일치 내역

(단위 : 천 원)

	정산니	산내역서		정산금액과
정산항목	계약 금액	정산 금액(A)	증빙 금액(B)	증빙금액의 차이 (C=B-A)
유인물비	550	550	1,540	+990
응답사례비	20,000	20,000	120,179	+100,179
보고서 편집/교정교열	300	300	539	+239

[표]와 같이 ●●●●● 자 제출한 지출 증빙으로는 ●●●●● 자 공급받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공사가 발주한 "2022년 TV·신문이용행태조사 용역"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팀은 부실한 증빙서류에 대해 별도의 보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23년 1월 13일 ⑥⑥⑥⑥⑦ 자 청구한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결과 「용역표준계약서」의 4.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의 정산 및 증빙검토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의 사실과 관련하여 A국 C팀은 ⑥⑥⑥⑥ 가 여러 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관행적 용역비용 집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향후에는 정산금액에 맞는 증빙서류 처리 및 제출을 요청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의] ④국 ⓒ팀은 용역계약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④국		국장	***
<u>A</u> 7	©팀	팀장	>>>
(A) = 7	©팀	부장	000

주 의 요 구

제 목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미준수

관계부서 A국 D팀

내 용

1. 업무개요

④국 ①팀은 「업무분장지침」 제3조 별표에 따라 광고통계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 및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시행 경영관리국-3, 2022.1.3.) 」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①팀은 [표]와 같이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위촉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제안서평가 위원회 외부위원 위촉현황

문서명	내부위원	외부위원
2023년 광고경기전망지수 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실시 (전자 ④국-1352, 2022.12.16.)	4명	4명
2022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전자 ④국-561, 2022.4.20.)	4명	4명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의 사실과 관련하여 ④국 ①팀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향후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주의] A국 D팀은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운영 할 경우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前)	④ 국		국장	^ ^ ^	(現 ⓒ국장)
(前)	④국	D팀	팀장	***	(現 🛭 국장)
	④국	D팀	팀장	***	
(前)	A子	D팀	차장	$\triangle \triangle \triangle$	(現 田目)
	A 子	D팀	대리	ු දුරුදු	

시 정 요 구

제 목 연구목적 도서구입비 사용 부적정

관계부서 A국 B팀

내 용

1. 업무개요

진흥전략사업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미디어·광고 진흥사업, 연구사업 관리, 기금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 연구, 정부정책연구, 기타 공사업무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① (훈소(총 6명의 전문직위원으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규정」제3조(예산운영 원칙) 제1항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산운용지침」에서도 예산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내・외부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④국에서 자체 제정한 「연구사업 내부 연구비 산정기준 및 지침」의 [2-2. 국내외 자료구입 및 조사비] 조항을 통해 도서를 포함한 자료구입은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로 특정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8. 연구목적 도서구입 및 도서 반납내역]을 통해 감사기간 내 구입한 도서목록을 검토한 결과, [표]와 같이 연구목적 도서로 부적정한 도서 구입내역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해당 도서 구매자인 ▽▽▽ 위원으로부터

도서구매 적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통해 제출받았으나,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서의 목적이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수험서인 경우 연구목적 도서로서의 적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표] 부적정 도서 구입 내역

연번	구입도서명	구입금액(원)	연구주제	비고
1	경영지도사 2차 (나만의 주관식 문제집)	17,550		
2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36,000	광고산업	
3	경영지도사 2차 인적자원관리	36,000	포용적 성장 ('21.2.~'21.7.)	수험서
4	경영지도사 2차 재무관리	26,000		
5	정석 경영조직론	26,000		
	합계	141,550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에 대해 관련자는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도서임을 연구내용 및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으며, 감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목적 도서구입비 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A)국 (B)팀은

- ① [시정] 연구목적으로 부적정한 도서의 구입에 대해 시정(회입)조치 하시기바라며,
- ② [주의]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A)국 (B)팀 전문직위원 ▽▽▽

시 정 요 구

제 목 학회활동비 지원금 사용 부적정

관계부서 A국 B팀

내 용

1. 업무개요

진흥전략사업팀은 「업무분장지침」제3조 별표에 따라 미디어·광고 진흥사업, 연구사업 관리, 기금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내부 연구, 정부정책연구, 기타 공사업무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활동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해 (윤소(총 6명의 전문직위원으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④국에서는 연도별 품의를 통해 「방송·광고·언론 관련 학회활동 지원계획」을 수립, 전문직 연구위원에 대한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계획에서는 임원 및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최대 3개 학회의 범위 내에서 가입비, 연회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출받은 감사요구자료 [10. 방송·광고·언론 관련 학회활동 지원내역]을 검토한결과, [표]와 같이 ▼▼▼ 연구위원은 2022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평생회원가입비]를 지원요청하여 지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또한 연회비(50,000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회원 가입비를 지원 신청한점, 다른 연구위원과 비교하여 지원금액이 과도한 점 등을 사유로 감사심의위원회는 부적정한 학회활동비 지원금 사용으로 판단하였다.

[표] 연구위원 대상 학회활동비 지원내역(2022년)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학회 및 명목	지원금액(원)
1	$\nabla\nabla\nabla$	한국광고학회 연회비	50,000
		한국언론학회 연회비	55,000
		한국방송학회 연회비	50,000
2	777	한국언론학회 연회비	55,000
		한국방송학회 연회비	50,000
		한국광고홍보학회 연회비	55,000
	ЬЬЬ	한국언론학회 연회비	55,000
3		한국방송학회 연회비	60,000
		한국광고학회 연회비	50,000
	FFF	한국언론학회 연회비	55,000
4		한국광고학회 연회비	50,000
		한국광고홍보학회 연회비	50,000
5	***	한국광고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70,000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평생회원 가입비	250,000
6	ן ו ו	한국광고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70,000
		한국광고홍보학회 연회비	50,000
		한국광고PR실학회 연회비	50,000

관계부서 의견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학회활동 지원에 대해 관련자는 평생회원 가입비 또한 지원대상으로 이해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으로 평생회원 가입비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A국 B팀은

- ① [시정] 지원대상이 이닌 학회 평생회원 가입비 지원금액에 대한 시정(회입)조치 하시기바라며.
- ② [주의]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前 A子

(B)팀

전문직위원 ▼▼▼ (現 ⓒ팀)

[별첨2] 이의신청 심의결과통보서

심의결과통보서

감사규정 제43조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심의일자	2023. 6. 30.	심의결과	기각		
원 처분 요지	공사「예산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④국에서 자체 제정한 「연구사업 내부 산정기준 및 지침」에서도 연구사업 예산집행시 도서를 자료구입은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로 특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에 비추어볼 때 내부연구용으로 적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 구입내역 5권이 있음이 확인되었 감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도서 구입금액인 141,550원에 시정(회입)조치를 처분요구하였음.				
이의신청 요지	1. 경영지도사 도서구입의 목적은 공사의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사 자격취득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서가 아님 2. 구입도서의 업무 관련성 평가는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사 육성지원 등 공사 미래방향 논의에 대한 참여 및 이해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할 수 있음 3. 연구 참고도서는 보고서에 직접 인용되지 않더라도 연구자에게 낯선 영역에 대한 배경지식을 습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과잉금지 원칙 차원에서 해당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함				
심의의견 요지	구매하였다는 행위의도 도서의 발간목적이 경영 업 내부 연구비 산정기 연구목적으로 구매하는 린 것임. 위와 같이 이의신청	를 판단한 것이 아님. 당지도사 수험 참고서라는 준 및 지침」에 비추어볼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당서와 별첨자료 등을 트 요구가 위법하거나 부당	도사 시험 응시목적으로 지적사항의 요지는 해당 : 점에 있으며, 「연구사 : 때, 시험참고서를 내부 판단하여 처분요구를 내 E대로 이의신청 내용을 하다고 인정할 요소가		
변경내용 (※변경 결정시)		해당없음			
2023년 6월 3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직인생략)					